

시립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59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5월 25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시립청소년드림센터는 2012.10.01.부터 재단법인 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에 위탁 운영 중으로, 2017.07.07.부터 3년간 재위탁 하여 2020.06.30.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
- 나.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2년의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실시한 결과 1차(조직담당관 민간위탁평가위원회), 2차(청소년정책과 적격자심의위원회) 모두 적정으로 결정되었음
- 다. 현 수탁법인이 위기청소년 종합 지원 분야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2022.06.30.까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위탁 동의를 요청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시립청소년드림센터 운영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 -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청소년 기본법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-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제1호

○ 재계약 사유

- 청소년드림센터는 위기청소년에게 One-Stop개념의 종합적인 전문 서비스 제공으로 청소년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시설로 사업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됨
- 현 위탁법인은 1956년 광주살레시오학원 설립을 시작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, 위기청소년을 위한 상담·교육·치료,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생활지원 등 올바르게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 법인으로 청소년교육, 상담, 복지에 기여하고 있음
-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원스톱 전문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가출청소년 일시쉼터, 청소년성문화센터(체험관), 대안학교(도시형, 위탁형), 인턴십 교육지원사업, 가정법원 교육명령 수탁기관, 사회가장자리 청소년 지원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온 바, 향후 2년간 동 법인에게 재계약을 통해 운영토록 하고자 함

다. 위탁 사무 내용

-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상담사업
- 가출청소년 조기발견 및 보호, 거리상담 등 청소년일시쉼터사업
- 위기청소년 등을 위한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대안교육 사업
- 직업,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역량강화 및 자립지원
- 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활동 등의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업
- 청소년 종합서비스 기관으로서 선도적인 모델 정립사업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43
- 시설규모 : 대지면적 22,650㎡, 건물연면적 6,462㎡
(지하 1층, 지상 4, 5층)
- 주요시설 : 상담실, 집단상담실, 댄스연습실, 음악연습실, 청소년 일시쉼터, 청소년성문화센터, 이룸학교, 꿈에학교 등
- 이용대상 : 청소년 및 지역주민
- 위치도



마. 민간위탁기간: 2년(2020.7.1. ~ 2022.6.30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재계약(재단법인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)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2,580백만원('20년)
- 산출근거 : 인건비 946백만원, 운영비 458백만원, 사업비 1,176백만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청소년 기본법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
-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-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※ 작성자 :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상담팀 한경숙(☎2133-4128)